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565

발의연월일: 2025. 4. 3.

발 의 자:안상훈·최보윤·김예지

이인선 • 박성훈 • 조정훈

안철수 • 주호영 • 이성권

조경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계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사망신고의무자가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수급권자가 가입하였거나 가입한 연금관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신고하도록 함.

그런데 신고의무자가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 신고를 한 경우, 별도의 신고서를 연금관리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에 신고의무자가 연금관리기관에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처리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법률관계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사망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사망 신고 등) ① 연계급	제24조(사망 신고 등) ①		
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			
고의무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연계급여의 수급			
권자가 가입하였거나 가입한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			
중 어느 하나의 연금관리기관			
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	<u>다만, 사망사실을</u>		
<u>설></u>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사망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u>다.</u>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